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

읽걷쓰AI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

2026. 10.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목 차

Ⅰ. 개요 ····· 1
1. 목적 ····· 1
2. 근거 ····· 1
3. 주요내용 ····· 1

Ⅱ. 취학 절차 및 흐름도 ····· 2
1. 초등학교 취학 절차 ····· 2
2. 취학절차 흐름도 ····· 3

Ⅲ.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4
1.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 4
2. 조기입학·입학연기 ····· 5
3. 입학기일 등의 통보 ····· 6
4. 취학통지 및 취학아동명부 통보 ····· 6
5. 예비소집 ····· 8
6. 입학식 ····· 9
7.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 9
8. 의무취학 독려 ····· 10

Ⅳ. 행정사항 ····· 10
1. 취학통지 관련 읍·면·동 협력 및 통보 철저 ····· 10
2. 미취학아동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 11
3.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노력 ····· 12
4. 계획 수립 및 홍보 ····· 12

[서식 1]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 13
[서식 2]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 ····· 14
[서식 3] 초등학교 취학유예 신청서 ····· 15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6
[참고 1]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17
[참고 2] 의무교육 관련 법령 ····· 18
[참고 3]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홍보문) ····· 24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

Ⅰ 개 요

1. 목적

❑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방법 안내

2. 근거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3. 주요내용

❑ **초등학교 취학 연령**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아동 (2027학년도 취학 2020. 1. 1. ~ 12. 31. 출생 아동)

❑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1년 범위 내)**

- 취학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 **추진일정**

구분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일정	10. 1. 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0. 1.~12. 31.
주체	읍·면·동장	교육장	국·사립초 학교장	읍·면·동장	보호자

❑ **주민등록 말소,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절차**

-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에 입학 가능

Ⅱ 취학 절차 및 흐름도

1. 취학 절차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전년도 입학연기대상자 포함)**
- 취학아동명부 작성 후 **10일 이상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취학아동명부 작성 후 **전입한 취학대상 아동은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

○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해당 연령만 신청 가능)**
○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에 조기입학대상자는 등재, 입학연기대상자는 제외**
○ **읍·면·동장은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국・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 허가자를 결정하고 **입학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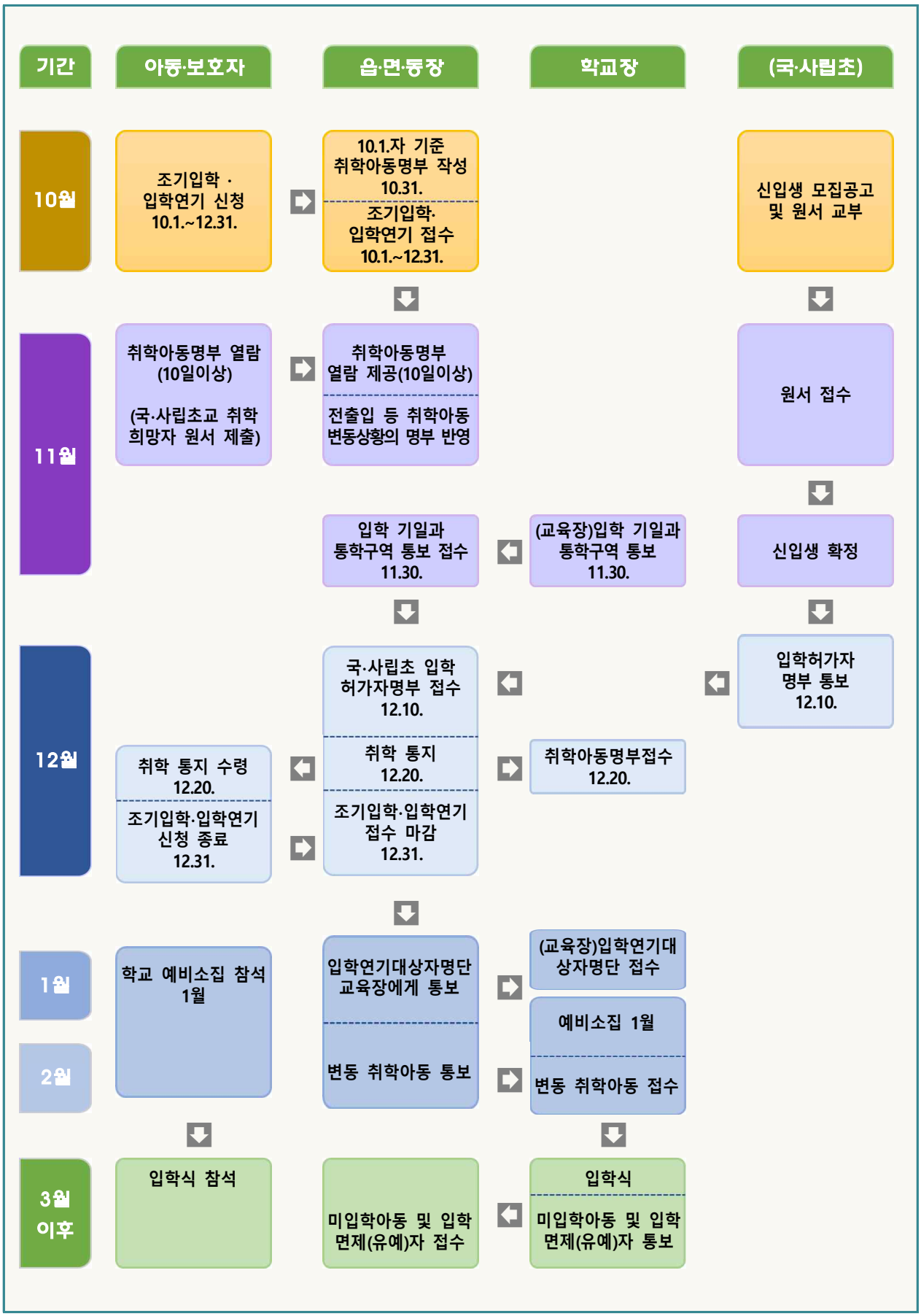
○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 및 학교장에게 취학아동명부를 통보**
-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

↓

예비소집

○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 실시**(2027. 1. 5. 화요일)**

2. 취학 절차 흐름도


기간
아동·보호자
읍·면·동장
학교장
(국·사립초)
10월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 10.1.~12.31.
10.1.자 기준 취학아동명부 작성 10.31.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 10.1.~12.31.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 교부
11월
취학아동명부 열람 (10일이상)
(국·사립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 제출)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10일이상)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원서 접수
입학 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접수 11.30.
(교육장)입학 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11.30.
신입생 확정
12월
국·사립초 입학 허가자명부 접수 12.10.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 12.10.
취학 통지 수령 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종료 12.31.
취학 통지 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 마감 12.31.
취학아동명부접수 12.20.
1월
2월
학교 예비소집 참석 1월
입학연기대상자명단 교육장에게 통보
변동 취학아동 통보
(교육장)입학연기대상자명단 접수
예비소집 1월
변동 취학아동 접수
3월 이후
입학식 참석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접수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통보

Ⅲ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법 : 초·중등교육법, 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

❑ 조사 대상 법 13-①, 영 15-①

- 기준일: 매년 10월 1일
- 취학아동 조사 대상
  - 취학대상: **2020. 1. 1. ~ 12. 31. 출생 아동**
  - 전년도 미취학(입학연기·취학유예·무단미취학 포함) 아동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은 제외
  - 조기입학 신청대상자(5세) 외의 연령 미달 아동은 취학 불가

❑ 취학아동명부 작성 및 열람

-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10월 31일까지** 영 15-①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토대로 인적사항 및 연락처 철저히 확인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10일 이상** 영 15-⑤

❑ 유의사항

- 미취학 아동 누락 방지, 적령 아동의 중복 및 허위 등록 방지

  ※ 입학연기·취학유예·무단미취학 아동 관리 철저
- 전·출입에 따른 취학아동명부 변경 시, 읍·면·동장 간 연락 철저
-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전입 아동 발생 시 지체없이 명부에 등재** 영 15-⑥
-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취학아동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취학 홍보 실시
  - 통장·반상회·아파트 및 마을 방송, 게시판 활용
  -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에 안내

2. 조기입학 · 입학연기

【보호자 → 읍·면·동장】

❑ **신청 기간**: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법] 13-②, [영] 15-②,③

❑ **신청 대상** [법] 13-②, [영] 15-②,③

○ 조기입학: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아동

○ 입학연기: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아동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는 해당 연령 대상자만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영] 15-②,③,④

○ 신청방법 [서식1], [서식2]

- 아동의 보호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시 보호자에게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

○ 취학아동명부 반영

- 조기입학 대상자: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입학연기 대상자: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

○ 취학 전 거주이전 시

- **전출 읍·면·동장은 전입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사실을 즉시 통보**
- **전입 읍·면·동장은 조기입학 대상자의 취학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입학연기 대상자는 차년도 취학아동명부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유의사항**

○ **조기입학** 신청 아동의 **취학아동명부 등재** 여부 확인 철저

○ **입학연기** 신청 아동이 **차년도 취학아동명부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읍·면·동장은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 철저

○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는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을 안내

○ (변경) 입학연기 신청 : 보호자 →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대면 방문 원칙

○ 입학연기 신청 기간 이후 취학 연기 희망 시 학교장에게 취학유예 신청[서식3]

※ 취학유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3.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 **통보기간: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16-①

○ 읍·면·동의 장은 통·반 변동 현황을 교육장에게 알리고, 교육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교육장은 학교별 **예비소집 및 입학기일의 시간과 장소**를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사립초 학교장】** 영 16-②

○ 국·사립초 학교장은 입학허가자 명부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국·사립초 입학허가를 받은 아동의 **학교명을 취학아동명부에 기재하여 주소지 통학구역 내 공립초등학교에 통보**

※ 국·사립초 취학 절차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10월경

○ 원서 접수 및 마감: 11월경

○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11월경

○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12월 10일까지**

☞ 국·사립초의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안내**

4. 취학통지 및 취학아동명부 통보 【읍·면·동장】

❑ **취학통지서 통보: 매년 12월 20일까지 【읍·면·동장 → 보호자】** 영 17-①④

○ **배정학교·예비소집일·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취학통지서 통보**[서식5][서식6]

- 보호자의 취학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 (변경) 취학통지서에 보호자 주 연락처 체크

○ **취학통지서가 반송된 아동의 소재·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통지서 이면에 사유 기재 후 학교장에게 취학아동명부 통보 시 안내

- **취학통지서가 반송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안 될 경우, 경찰 협조 요청 가능**

❑ 취학통지서 발급

○ 온라인 취학통지서

- 발급 사이트: 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https://www.plus.gov.kr)
- 발급 기간(안): 2026. 12. 3.(목)~12. 20.(일), 18일간 예정
- 발급 내용: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 저장)
- (변경) 발급 대상: 세대주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학부모

○ 우편·인편 취학통지서

- 발급 기간(안): 2026. 12. 10.(목)~12. 20.(일), 11일간 예정
-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읍·면·동에서 우편, 인편 안내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 취학아동명부 통보: 매년 12월 20일까지 【읍·면·동장 → 학교장】 영 17-①②③

○ 학교장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취학아동명부 통보**

- **아동: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보호자: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변경) 취학아동명부 정보시스템 연계 통보 예정(추후 안내)

- (기본 방향) 읍·면·동이 작성한 **취학아동명부** 및 **입학연기 대상자 정보**를 행정정보 공통이용시스템을 통해 **나이스로 연계·통보**

주민등록		행정정보 공통이용 SY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비고
(읍면동) 취학정보 입력·통보	→		→	교육장	입학연기대상자 명단(1월초)	기능개선 예정
	→		→	학교장	취학아동명부(12월)★	올해 기능 구현
	←		←		미취학, 취학 유예·면제 통보	기능개선 예정

- <u>**올해는** 학교 자동 매칭이 불가하여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나이스로 전송된 취학아동정보의 **학교명 및 오류 여부를 확인 후 배정학교에 통보**</u>

☞ 정보시스템으로 통보 1회(12월) 실시 예정이며, 변동 통보는 전년도와 동일

읍면동/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민등록시스템)		교육지원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시스템, NEIS)		학교 (교육정보시스템)
취학명부 전산업무 사용자 매뉴얼에 배정할 학교명을 정확히 입력하고 취학정보 검증 후 송부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나이스 담당자가 취학 정보 검증 후 오류사항에 대해 주민등록시스템 담당자에 자료 수정요청 - 정정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통보 ⇅ **< 교육지원청 >** - 관할청내 학교 정보 및 오류 정정 여부를 확인 → 오류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자료 정정 요청 - 취학 자료(학교명, 오류 정정 등) 확인 후 배정학교로 통보	⇒	전달받은 취학 정보를 확인하여 예비소집일 및 학적 처리
(~'26.11월 초)		(~'26.11월 중)		(~'26.12월 초)

○ 취학아동명부 변동 발생 시(추가, 삭제 등)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

- 취학아동명부 통보 이후 발생한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도 반드시 통보
- 거주지 이전 또는 입학학교 변경 발생 시, 취학아동명부 반영 후 취학통지서 재배부
- 누락·중복 아동 발견 시, 취학아동명부 수정 후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

❑ 취학아동명부 통보 이후 전·출입자 처리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은 취학아동명부를 즉시 수정하고 새롭게 입학할 학교장, 당초 배정 학교장, 보호자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아동의 이중등재 및 누락 방지

❑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명부 등재

○ (학교) 미취학 아동 명단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 미취학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고 취학통지서 배부

○ 거주지 이전으로 미취학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전출지 읍·면·동장은 전입지 읍·면·동장에게 해당 아동의 미취학 사실을 반드시 통보

5. 예비소집일 【학교장】

❑ 예비소집일: 2027. 1. 5.(화)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모·보호자의 참석 기회 확대 권장
(평일 저녁 시간까지 연장 또는 추가 실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778(2019.4.8.),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확대」]

※ 필요시 예비소집 추가 실시 가능

❑ 운영 방법

○ 아동 소재·안전 확인: 아동과 학부모 함께 참석,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개별 내교 또는 추가 소집일을 통해 실시

- 예비소집일 운영 기간 및 시간 연장, 접수 장소 및 시간 분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소재·안전 확인 우선
- 장기 휴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화상통화, 아동과 직접 유선통화 등 소재·안전 확인 철저

◦ 각 학교별 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해 예비소집 일시 및 운영 방법을 안내하여 예비소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철저**

-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불가 및 아동학대 의심 징후 확인 시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
- **수사의뢰 시 사전 기초조사를 충실하게 실시(경찰 협조 요청사항)**

❑ 학교장은 예비소집 결과 및 불참 아동 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이를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 공동통학구역 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취학아동명부 및 예비소집 참석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초등학교에도 송부

※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아동이 없도록 공동통학구역 내 학교 간 적극 협력

6. 입학식

【학교장】

❑ **입학식: 매년 3월 초(학교장 결정)**

❑ 학교장은 입학식 후 취학 현황을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

❑ 취학 면제·유예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입학 가능 [법] 14-② [영] 29-②

7.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학교장】 [영] 28-①②④⑤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

-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신청 시 증빙서류

- 질병·발육부진·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관련 증명서 등
- 그 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취학의무의 유예·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

8. 의무취학 독려 【학교장】

❑ **의무교육 미취학 관리 세부시행기준 준수**

-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및 취학 통지 철저
- 입학연기 및 취학유예·면제 대상자 결정
- 취학의 독려(교육감) 및 독촉(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
- 입학연기 및 취학유예 아동,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주민등록이 없는 아동의 취학** 영 19-①②

○ **주민등록 말소·무호적 아동이 취학**할 수 있도록 11월 ~ 다음 해 2월까지 읍·면·동장 및 학교장은 **집중 홍보**

-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의 증명서를 확인하여 거주지 통학구역 내 학교 입학 허용

○ **외국 국적·국내 불법체류 아동**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출입국 사실 증명,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 통학구역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 허용

○ **주민등록이 없는 아동은** 취학아동명부에 등재가 안 되어 취학통지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보호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입학 신청**

Ⅳ 행정사항

1. 취학통지 관련 읍·면·동 협력 및 통보 철저

❑ **(교육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영 16-①

❑ **(국·사립 학교장) 입학허가자명부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영 16-②

❑ **(읍·면·동장)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20일까지 취학통지** 영 17-①

❑ **(읍·면·동장) 학교장에게 취학아동명부 송부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영 17-②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엑셀자료(암호화 등 개인정보파일 보호) 송부 협조

○ 취학아동명부 시스템 통해 1회 통보(12월), 그외 통보는 전년도와 동일(추후안내)

❑ **(교육지원청)** 나이스로 전송된 취학아동명부 배정학교에 통보(추후안내)

❑ **(읍·면·동장) 취학아동명부 변동 시 즉시 보호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 영 17-③

- 취학아동명부 통보 이후 **변동(전출입, 조기입학, 입학연기, 누락 등)**이 발생될 경우 지체없이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

❑ **(학교장) 지정학교 외 입학 승낙 시 읍·면·동장 및 당초 지정 학교장에게 통보** 영 18-②

- 지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 및 당초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 입학연기대상자 명단 교육장에게 통보** 영 15-④

2. 미취학아동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 **(학교) 미취학 아동의 취학 여부 및 미취학 사유 정확히 확인**

- 미취학 사유를 학교에서 임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관리
- 전출 등으로 타 학교에 취학한 아동이 미취학 아동으로 중복 관리되지 않도록 취학 여부를 정확히 확인

❑ **(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을 읍·면·동과 공유하여 차년도 취학아동명부 누락 방지**

- 읍·면·동에서 미취학 아동의 취학 여부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 철저

❑ **(학교) 거주지 불명, 연락 두절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 필요한 경우 읍·면·동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소재·안전 확인
- 미취학 아동이 취학할 때까지 소재·안전 및 취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

❑ **(교육지원청) 관내 아동의 취학 현황 파악 철저**

- 학교의 보고 및 읍·면·동과의 협조를 통해 관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현황을 정확히 파악

3.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노력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 학교, 구청, 읍·면·동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 탑재

❑ 읍·면·동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 아파트 관리사무소·반상회·통장을 통한 거주 사실 확인 등 홍보 강화

○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이중신고, 거짓사실 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안내를 통해 위장전입 방지에 노력

4. 계획 수립 및 홍보

❑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홍보 적극 추진

○ 자료 배포, 학교·교육지원청 누리집,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예비소집 개최 일시 및 운영방법 등 안내
-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기간 안내 (2026.10.1.~12.31.)

※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취학) 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배부 예정

❑ 미취학아동 현황 파악과 취학의 독촉 및 독려 철저

- 학교, 읍·면·동, 경찰, 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 구축

[서식 1 -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 읍장 · 면장 · 동장 귀 하

------(기관 인)----------

조기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 ○ 읍장 · 면장 · 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거주지 이전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입학 신청 사실을 알리고 전입한 주소지의 통학구역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 연기하고 그다음 해에 취학하고자 입학연기를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 읍장 · 면장 · 동장 귀 하

------(기관 인)----------

입학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 ○ 읍장 · 면장 · 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거주지 이전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입학연기 신청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3 - 예시(학교장용)] : 입학연기 신청서 제출기간(10.1.~12.31.) 이후부터 입학 전까지 질병·발육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초등학교 취학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취학유예-				
입학대상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취학유예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 유예하고 그다음 해에 취학하고자 취학유예를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 ○ 초 등 학 교 장 귀 하

------(기관 인)----------

취학유예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유예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인 천 ○ ○ 초 등 학 교 학 교 장 (인)

접수번호	취학유예-	접수인	성명 : (서명)

※ 취학유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OOOO학교(이하 ‘학교’)는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비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제공하는 정보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비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 각종 학생 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 취학 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상담
○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20 년 월 일

학생 : 000 (서명)

학부모(또는 보호자) : 000 (서명)

OOOO학교장 귀하

[서식 5] 취학통지서 양식

취 학 통 지 서

(학 교 제 출 용)

발행번호: 00

취 학 아 동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주 소					
취 학 가 능 초 등 학 교	통학구역	단일학구 □		공동학구□	
	가가초등학교, *나나초등학교,* *다다초등학교*				
예 비 소 집 기 간	*(본) 2000.00.00.~00. 10:00~16:00,* *(추가) 2000.00.00. 10:00~16:00*				
입 학 일 시	*2000.00.00. 10:00*				
보 호 자 연 락 처	**구분**	**관계**	**성명**	**전화번호**	**주 연락처**
	보호자1	*부*		*010-0000-0000*	□(해당 시 체크)
	보호자2	*모*		*010-0000-0000*	□(해당 시 체크)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취학대상아동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보호자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학 전

※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동의인 (서명)

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위 학교에 배정되었으니, 보호자는 **본 통지서를 지참**하여 취학 가능 학교의 예비소집에 **취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12월 ○○일

○○동장

※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하여 드린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취학하려는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보호자와 읍·면·동 담당자는 위 작성란의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서식 6] 안내자료

< 예비학부모 유의사항 안내자료 >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에 따라, 미취학 시 소재·안전 파악을 위한 학교·읍면동·교육지원청의 연락이 지속될 수 있으며, **연락 두절 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입학연기시 아동 동반 필수)**

※ **입학연기 신청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의 **대면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외체류, 병원장기입원 등 대면방문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영상통화 확인 병행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예비소집 참석 시 **취학통지서**를 **소지**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필히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수집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수집이 제한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6. 생략
>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제16조제1항)

ㅇ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제2항)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예시문을 첨부하오니, 학교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초등학교 입학 시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졸업 때까지 활용 가능하므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의 필요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되, 동의한 사항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참고 2]

의무교육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발췌)

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의 장은 조기입학 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읍·면·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③읍·면·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면·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 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 · 면 · 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읍 · 면 · 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 · 경고 및 보고) ① 읍 · 면 · 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 · 면 · 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 · 면 · 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 ·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 · 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 · 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 · 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재적 · 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 · 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 · 면 · 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 · 제25조의2 · 제26조 · 제27조 · 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참고 3]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Ⅰ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20.1.1.~12.31. 출생 아동 입니다.

○ **우리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1월 초에 거주지 읍·면·동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때문에 취학 연령이 바뀌나요?**
-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만 나이 통일법」 예외 규정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Ⅱ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게 입학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입학연기 신청은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대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조기입학 대상: 2021. 1. 1. ~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대상: 2020. 1. 1. ~ 12. 31. 출생 아동**

★ **취학유예**: 입학연기 신청 기간 이후 입학 전까지 질병·발육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 신청**

Ⅲ 취학통지서 발급기간(예정)은 2026.12.3.(목)~2026.12.20.(일) 입니다.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 신청사이트: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https://www.plus.gov.kr)
- **신청 기간(안): '26. 12. 3. (목) ~ '26. 12. 20.(일), 18일간 예정**

○ **우편·인편 취학통지서 발급**
- 방법: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읍·면·동에서 인편, 우편 안내
- **기간(안): '26. 12. 10. (목) ~ '26. 12. 20.(일), 11일간 예정**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Ⅳ 주민등록 말소, 국내 불법체류 아동 등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 증명,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